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 108호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향상시켜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영상진흥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문

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위원회를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위원회 수행사업의 범위 및 임원의 구성, 이사장의 업무, 사무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라.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시장은 영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영상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 (참조 : 시의회 문화
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과 기술을 말한다.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영상위원회 설립)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영상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7조(사업) 영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 제공 및 지원, 유관기관·단체 협조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문화 자산에 대한 영상·디지털 데이터 구축
3.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시의 영상·문화산업 콘텐츠의 개발
4. 영상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국내단체와의 연대 유지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그 밖에 영상관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8조(임원) ① 영상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영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사무기구) ① 영상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영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영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규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1조(목적)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 영상진흥기본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문화예술진흥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시책과 권장) -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영상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5>

②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영상진흥기본법 제5조 (정부의 시책)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조성)

-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문화재단 영상위원회 및 남구 영상관련시설(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 2012년 사업 및 인건비를 추계함 아울러 통합시 인건비 조정분에 대하여는 추계가 어려워 산정하지 아니함.

- 영상관련 기관의 가칭 ‘영상위원회’ 독립법인 출범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추계가 부정확하여 산정하지 않음.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영화공간주안의 보유 기자재 및 시설의 경우 내구연한 도래 등에 따른 비용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계가 부정확하여 일부 산정하지 않음.

나. 추계 결과

- 2012년도 출연금 등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2년 예산	주요내역
합계	1,920	
인건비	500	◦ 급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수당 등
(문화재단)	(250)	- 인천문화재단 영상위원회 5명
(남구청)	(250)	- 주안미디어센터 및 영화공간주안 14명
사업비	850	◦ 영상인프라 구축사업
(문화재단)	(700)	-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 독립영화제작 및 인천영상인력 지원
		- 영상국제교류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시비보조)	(150)	- 시민영화제 및 인천영화상영회 등 지원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교육사업 보조
		- 영화공간주안 홍보 사업 보조
운영비	250	◦ 시설운영
(남구청)	(250)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영화공간주안(영화관) 운영 등
시설비	320	◦ 영상관련 시설 개보수 및 구입
(재원조정교부금)	(300)	- 영화공간주안 영사기 구입
(남구청)	(20)	- 영화공간주안 전기안전공사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구입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보조금(일반회계)으로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배 동 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입	영상인프라 구축 보조금	1,840	1,870	1,900	2,000	2,000	9,610
	소 계	1,840	1,870	1,900	2,000	2,000	9,610
세출	영상위원회 운영(영화공간등)	900	900	900	1,000	1,000	4,700
	영상인프라 구축사업	940	970	1,000	1,000	1,000	4,910
	소 계	1,840	1,870	1,900	2,000	2,000	9,610
재원 조달		1,840	1,870	1,900	2,000	2,000	9,610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1,200	1,200	1,500	1,600	1,700	7,200
	일반회계	1,200	1,200	1,500	1,600	1,700	7,2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500	500	200	200	100	1,500
민 간							
기타(자체수입)		140	170	200	200	200	910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영화공간주안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하여는
내구연한 및 관리주체 미정 등으로 추계가 어려워 계상하지 않았음
⇒ 재산관리 : 남구, 추후 통합운영 : 가칭 영상위원회

※ 2013년 기준 시비 추가부담

- 문화재단 영상위원회와 남구청 관리 영상시설·기관과의 통합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할 경우, 市에서 추가 부담되어야 할 재정은 가시적으로 약 6억원임
- 6억원중 5억원은 그동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주안의 운영 및
사업비로 남구청에서 지원되어 왔으며,
- 남구청에서는 영상위원회 독립법인 출범시에 현재 市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비 5억원에 대하여 2014년까지 부담하는 것을 검토 중임
- 따라서 2013~14년까지 市가 추가 부담하여야 할 재정은 잠정적으로 1억원임